

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1. 1. 5.>

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(제15조의6제1항 관련)

1. 표시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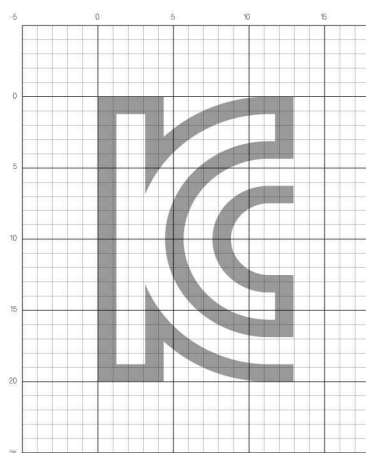
가.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



나. 도안 요령 및 색채

1) 도안 요령

가)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

나)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. 다만,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(檢定證印)[압인(押印: 눌러 찍음)·타인(打印)·각인(刻印: 새김도장) 등을 말한다]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2) 색채

가)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사용한다.

	남색 5PB 2/8
---	---------------

나)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R 6/4 색채)과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색,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을 사용할 수 있다.

	금색 10YR 6/4
---	----------------

	은색 N 7
---	-----------

	검정색 N 2
--	------------

※ 비고: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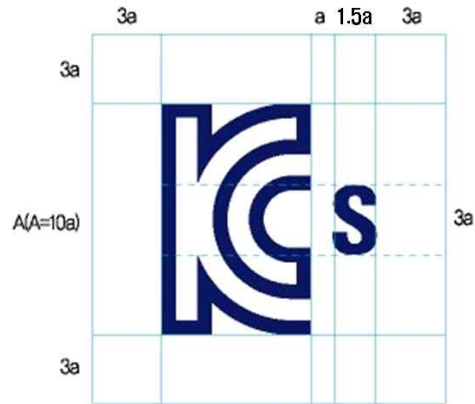
다.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

1)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



※ 비고

-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, Q, E, H로 한다.
 - S는 안전 분야, Q는 품질 분야, E는 환경 분야,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.
- 2) 도안 요령



2. 표시방법

- 가.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나.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.